

# 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공유관계확인의 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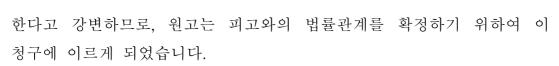
#### 청 구 취 지

- 1.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2/3, 피고가 1/3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와 피고는 20○○. ○. ○. 운수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외 ◈◈주식회사로 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금 30,000,000원에 매수하였습니다.
- 2. 원고와 피고는 위 매수자금으로 원고가 20,000,000원을 피고가 10,000,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원고가 2/3지분으로 피고가 1/3지분으로 공유등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.
- 3. 그런데 피고는 계속해서 동등한 동업자이므로 동등한 비율의 지분등기로 해야





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

1. 갑 제2호증 매매계약서

1. 갑 제3호증 영수증

1. 갑 제4호증 합의서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### ㅇㅇ지방법원 귀중



# 부동산의 표시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300 m²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 기 간	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 <b>^^</b>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•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• 위험이 있고,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•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됨(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1다25078 판결).		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

#### 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확인 및 형성의 소